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나51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이요흠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313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170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을 94,829,115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829,1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롭게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D의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그 채무액을 164,000,000원에서 146,995,440원으로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함에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전부를 취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원물반환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2)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흥관, 판사 윤동연

2

[별지 목록]

부 동 산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

1층 463.6412㎡

2층 458.7260㎡

3층 458.7260㎡

4층 458.7260㎡

5층 458.7260㎡

6층 453.1260㎡

7층 453.1260㎡

8층 453.1260㎡

9층 453.1260㎡

10층 453.1260㎡

11층 453.1260㎡

12층 453.1260㎡

13층 453.1260㎡

14층 453.1260㎡

15층 453.1260㎡

